case
10

래칫 타이 다운

요약

사례명	래칫 타이 다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5742 (2025.11.14.)
사실관계	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 및 후크를 뉴질랜드로 수입한 후, 원사를 직조 및 절단하여 웨빙 스트랩을 만들고, 이를 래칫 메커니즘 및 후크와 조립하여 래칫 타이 다운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래칫 타이 다운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과 후크를 단순 조립한 이후에도 웨빙 스트랩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유지하므로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웨빙 스트랩의 원산지인 뉴질랜드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Ⅰ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79.8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or 2.5% or 2.8%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시장정보

제8479.89호 시장 정보

대미 수출액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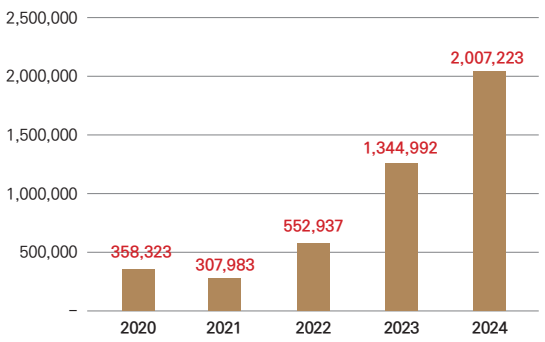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한국 수입액 / 미국 총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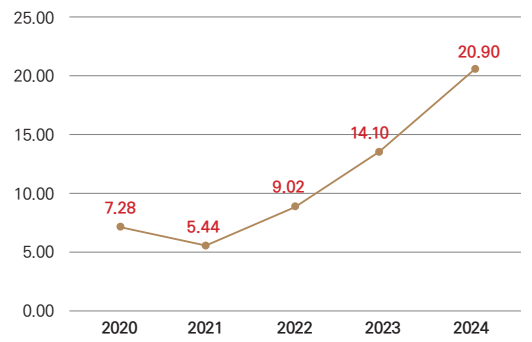

2024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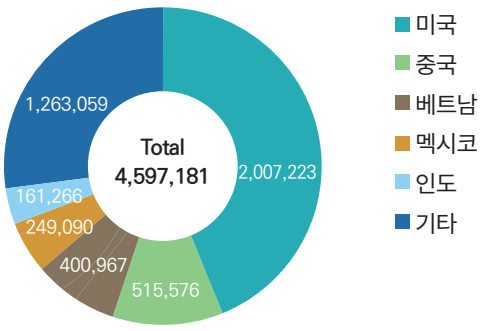

2024년 미국 주요 수입 국가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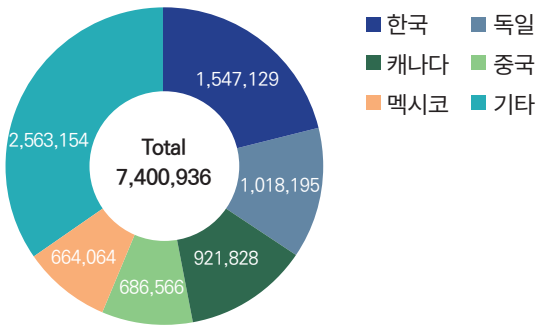

❖ 자료: K-stat

Ⅱ 판정사례

사 례 명 **[래칫 타이 다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5742** (2025.11.14.)

사실관계

요청자	Aerofast Tiedowns Ltd.	
제품	제품명	• a pair of two marine transom tie down straps (품목번호: TRHH-1.5-4)
	구성	• 레버 핸들이 포함된 기어 및 폴 타입의 래칫 메커니즘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직조 웨빙 스트랩 2개 • 고무 코팅된 금속 S-후크 2개
	용도	• 보트를 트레일러에 고정
	완제품 HTSUS	• 8479.89.9599

제조공정

상세공정

1. 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 및 후크를 뉴질랜드로 수입
2. 뉴질랜드 제조 공정
   (1) 직조기를 사용해 한국산 폴리프로필렌 원사를 웨빙 스트랩으로 직조한 후 일정 길이로 절단 및 단부 봉합 처리
   (2) 재봉기를 사용해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과 후크를 웨빙 스트랩에 조립
   (3) 최종 제품을 수출용 상자에 포장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유사한 원산지판정 사례에서 래칫 타이 다운 스트랩과 같은 제품의 본질적 성질은 웨빙 스트랩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5503 (2020.02.20.)*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43501 (2024.11.22.)*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901 (2021.02.04.)*

판정 결과

☑ 래칫 타이 다운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과 후크를 단순 조립한 이후에도 웨빙 스트랩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유지하므로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웨빙 스트랩의 원산지인 뉴질랜드임

결 론

✔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제품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을 생산한 뉴질랜드임

Ⅱ 시사점

• 래칫 타이 다운과 같이 특정 섬유로 제작되어 물건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물품을 고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스트랩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5742 (2025.11.14.), https://rulings.cbp.gov/ruling/N355742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HQ H305503 (2020.02.20.), https://rulings.cbp.gov/ruling/H305503
- CBP Ruling NY N343501 (2024.11.22.), https://rulings.cbp.gov/ruling/N343501
- CBP Ruling NY N316901 (2021.02.04.), https://rulings.cbp.gov/ruling/N31690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